법인신용카드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회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계약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여야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 법인신용카드는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신용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매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와는 사용 가능가맹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신용카드	법인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 가능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구매 후결제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결제 이용	일부 상품 限 가능	불가능	불가능

▶ 민원 ·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 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명의카드**는 카드 서명란에 **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임직원명의카드**는 서명란에 **임직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분실하는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는 어떻게 반환받나요?

→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Q 법인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법인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며, **카드사는 회원의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법인신용등급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Q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를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설명서

1. 법인신용카드의 특성

■ 법인신용카드는 회원(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해야 법인신용카드가 발급됩니다

■ 법인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원과의 여신계약기간인 법인유효기간과 개별카드의 유효기간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최대 5년입니다.
법인유효기간은 매월 청구서에 기재되며, 개별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 표면에 표시됩니다. **법인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인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개별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법인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갱신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용대금 상환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 여부

■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가상계좌(대금결제를 위해 카드사가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계좌) 입금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금리(수수료율)
일시불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결제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12.5% ~ 18.9%

■ **금리의 변동 여부**
- 회원이 할부결제 이용 시 이용개월,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3. 수수료율

■ **해외서비스 수수료 :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0.18%
  - (거래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국제브랜드 수수료 :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VISA1.0%(Untact +, Point Wave 상품의 경우 1.1%), Master 1.0%, URS 1.0%, AMEX 1.4%, JCB 없음, UPI 없음
  - (거래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접수일자의 신한은행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고객에게 원화로 환산되어 청구 됩니다.

4.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 연회비 : 연회비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서비스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구분	청구단위	연회비
기본 연회비	카드별	신용카드 상품별로 상이 (해당 상품의 연회비는 상품안내장 참고)
서비스 연회비		

■ 연회비 청구 :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의 발행 · 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 발급에 한정) 에 소요된 비용

(예시) 연회비 20만원(기본연회비 1만원, 서비스연회비 19만원), 부가서비스이용금액 10만원, 연회비 부과일수(이용일수) 120일 경우 반환되는 연회비
- 기본연회비 반환금액 = (청구연회비) ÷ 365일 × 잔여일수 = 10,000원 ÷ 365일 × 245일 = 6,712원
  * 단, 초년도 기본연회비 반환 제외
- 서비스연회비 반환금액 = (청구연회비 – 부가서비스이용금액 ÷ 365일 × 잔여일수 = (190,000원 – 100,000원) ÷ 365일 × 245일 = 60,410원
  * 이용일수 = 연회비청구결제일(초년도의 경우 카드수령등록일)~계약해지일, 잔여일수 = 365일-이용일수

■ 연회비 반환기한 :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5. 계약 해지 시 불이익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신용카드 이용의 제한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가맹점 : 1. 카지노, 2. 경마, 경정, 경륜장, 3. 복권방, 해외가상화폐거래소, 4. 초 · 중 · 고교 학교납입금, 5. 도시가스(산업용) 등
- 이용 한도 제한 가맹점 : 상품권(법인한도의 50%)

7. 법인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 법인카드 연체 후 90일 초과 시에는 은행연합회 불량 등재됩니다.

8. 연계 · 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 본 법인신용카드 상품의 연계 · 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상세내용 및 제공 조건은 '상품안내장'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 이용상품별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약정이율 + 최대 3%로 최고 연 20%** 로 합니다.

■ 다만,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12.5%)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발생, 카드이용 정지, 법인한도 감액, 카드이용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담보 등에 대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등(신용카드 법인회원 약관 제 13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카드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신용카드 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1/10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

◆ **기한의 이익이란 ?**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11. 위법계약해지권

■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카드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2.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또는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해 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금융거래가 제약**되며 **법인신용등급 등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 드리나,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법인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며, **카드사는 회원의 월 평균 결제능력, 법인신용등급,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안내드리는 사항이며, 고객께서는 상품안내장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여부	☐	본인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카드사 직원과 상담하여 본 설명서를 **교부** 받았으며, 위에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상품안내장>**에 기재된 **연계 · 제휴서비스 및 연회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위법계약해지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명(명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인감	서명(인)

※ 서명(인)란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 날인시 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신한카드